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2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
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
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,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존
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해석상
혼선을 방지하며, 관련 서식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되
생존 유공자의 배우자는 배제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,
제3조제8호를 삭제함
- 나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통합함에
따라 기존 배우자 복지수당(월 7만원) 조항을 삭제함
- 다. 복지수당 폐지에 따른 신청 서식(별지 제3호서식 삭제) 및 신청·지급
중지 관련 조문의 명목 및 자구를 정비함
- 라.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이
개정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
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함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6. 7. 30.~2026. 8. 19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”을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우”를 “이 조례에 따른 예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받는 단체”를 “받는 사람 또는 단체”로 하며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.
제3조제3호 중 “받는 단체”를 “받는 사람 또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희생 · 공헌자”를 각각 “희생 · 공헌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행 · 재정적”을 “행정적 · 재정적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

“시가”를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남시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망위로금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”을 “사망위로금”으로, “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, “신청서를(주민등록지 동장)”을 “신청서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에”로, “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”를 “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”을 “보훈명예수당”으로, “전일)”을 “전날로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3항 중 “지급한다”를 각각 “지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”를 “지급 중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”을 “보훈명예수당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제9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(월 7만원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람이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,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임 애 경
	팀장 직위 · 성명	복지기획팀장 안 선 진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신 운 재 (031-790-551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<후단 신설>	2. ----- ----- 받는 사람 또는 단체. 다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.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	3. ----- ----- ----- 받는 사람 또는 단체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	8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호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
전유공자의 배우자(사망한 참
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
한함)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
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
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
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
지원할 수 있다

1. (생략)
2.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
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
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
시 지역출신 희생 · 공헌자
의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
출신 희생 · 공헌자의 공적
소개
5. (생략)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
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
행·재정적 지원
- 6.·7.·8. (생략)

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관계
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하
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대한 -----

3. -----
----- 희생·공헌자

4. -----
----- 희생·공헌자-----

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

행정적·재정적 -----
- 6.·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복지지원 등) -----
----- 범위

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
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
을 할 수 있다.
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
의 입장료, 주차료 면제
2. ~ 5. (생략)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
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
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
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
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삭제
3. (생략)
4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: 1인당 월 7만원

② 지급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
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
(사망일)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
두고 거주(사망)한 사람으로 한
다.

제9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)
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
금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
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

-----.

1.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

----- 범위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 3. (현행과 같음)
- <삭제>

② -----

----- 시에 -----

-----.

제9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)
① ----- 사망위로
금-----

----- 별지

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에
따른 신청서를(주민등록지 동
장)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이 부
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
을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등
이 신청할 수 있다.

② 삭 제

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
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
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, 사
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「국가유
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
및 결정) ① (생 략)

②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
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
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
달부터 지급하며, 매월 말(공휴
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)에
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
금융계좌로 지급한다.

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
10일 이내 지급한다.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보훈

제2호서식-----

----- 신청서를 주민등록지를
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
에게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이내에 -----

----- 제5조제1항 각 호의
순서에 따른다.

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
및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보훈명예수당-----

----- 전날로
한다)-----

-----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-----

-----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시장

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, 16일 이후에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지급중지 -----

-----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보훈명예수당 -----

-----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발생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훈명예수당
 - 2027년 추가 소요예산 : 720,000,000원
 - 200,000원×300명×12월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
보훈명예수당	720	720	720	720	720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시비 100%)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지자체 보훈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에서 제외

4. 작성자 :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애경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					
보훈명예수당		720	720	720	720	720	3,6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20	720	720	720	720	3,600
	지방세	360	360	360	360	360	1,800
	세외수입	360	360	360	360	360	1,8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23. 6. 5.]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타법개정]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2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6. 3. 17.] [법률 제21050호, 2025. 9. 16., 일부개정]

- 제3조(적용 대상자)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.